

2021. 12. 02(목). 10:00
제28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김지훈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1년 11월 15일 의장으로 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범죄 및 사고 예방을 포함하고 남양주 북부경찰서 개청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의 기능에 범죄 및 사고예방을 포함(안 제3조)
- 나. 위원장, 간사, 실무협의회 등 협의회 구성을 변경함 (안 제4조, 제7조,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

나. 입법예고 : 2021.11.12.~11.19

※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성된 「지역치안협의회」의 기능을 확대하고, 남양주북부경찰서 개청에 따라 부위원장을 남북부경찰서장 공동체계로 조정하는 사항임.
- 아울러,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,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범죄예방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.

2021년 12월 02일

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배